



대학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2021년]

2022. 1.



동남보건대학교
DONGNAM HEALTH UNIVERSITY

목 차

제 I 장	자체평가의 개요	1
1.	관련근거	1
2.	자체평가의 목적 및 추진방향	1
제 II 장	자체평가 추진체계	2
1.	조직구성 및 역할	2
2.	자체평가의 내용	4
3.	자체평가의 방법	6
4.	자체평가의 절차	6
제 III 장	자체평가 결과	7
1.	평가결과 총괄	7
2.	기준별 세부평가결과	8
제 IV 장	자체평가 활용계획	47
1.	우수사례 및 개선·보완사항	47
2.	결과활용 계획	47

제 I 장 자체평가의 개요

1. 관련근거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평가)

제11조의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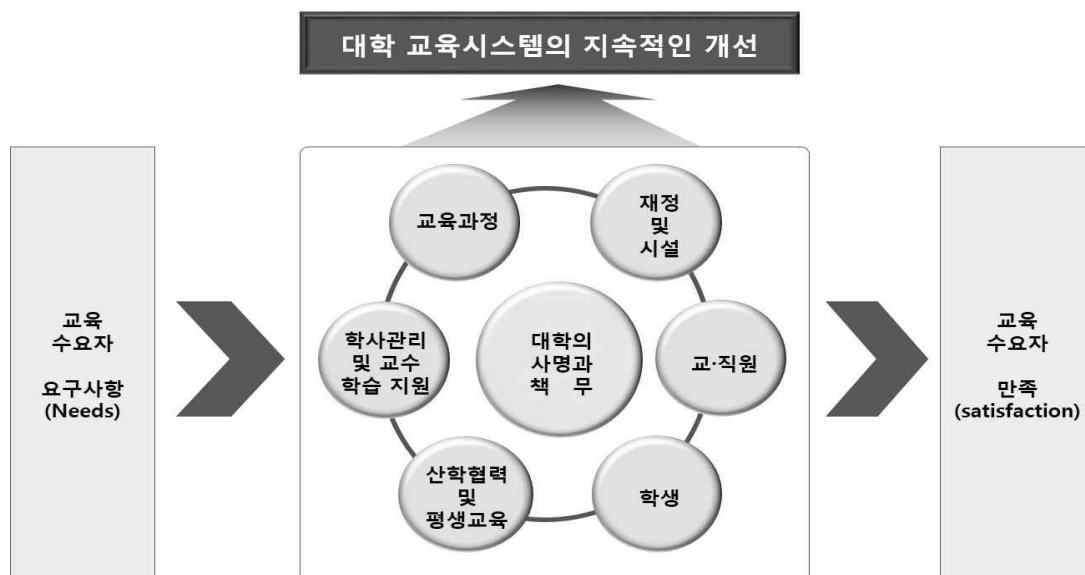
- 2) 「학칙」 제19장 자체평가

제85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 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3) 대학 규정집 「자체평가규정」

2. 자체평가의 목적 및 추진방향

- 1)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대학발전계획과 전략 수립 등에 활용
- 2) 자체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대학의 우수 부분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교육역량 향상 및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기반을 마련
- 3)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해하여, 자체평가 수행으로 대학 스스로 직업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그림 I-1] 자체평가의 목적

제 II 장 자체평가 추진체계

1. 조직구성 및 역할

1) 자체평가 추진체계



2) 자체평가위원회 및 자체평가추진실무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직위(소속)	성 명	비고
평가인증담당자(ALO)		기획조정처장	김○○	총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처장	김○○	
	위 원	교무처장	이○○	
	위 원	학생처장	조○○	
	위 원	사무처장	정○○	
	위 원	산학협력처장	황 ○	
	위 원	학술정보관장	김○○	
	위 원	평생교육원장	왕○○	
	위 원	성형치과기공소장	이○○	외부위원
		간 사	전략운영팀	민○○
자체평가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기획조정처장	김○○	
	위 원	전략기획팀장	김○○	
	위 원	전략기획팀	성○○	
	위 원	전략기획팀	이○○	
	위 원	전략운영팀장	이○○	
	위 원	총무팀장	한○○	
	위 원	학사운영팀장	이○○	
	간 사	전략운영팀	민○○	

3) 자체평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대학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 방안 모색
-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 대학자체평가 기획 및 조정
 - 대학자체평가 범위, 영역 및 항목의 선정
 - 대학자체평가 실시
 -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4) 자체평가추진실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 행정부서 팀장 그리고 자체평가실무교육을 다녀온 교원으로 구성하여 대학자체평가 제반 과정 및 결과 활용이 대학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함
-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 대학자체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 대학자체평가 자료의 분석과 평가 실행
 -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대학자체평가 결과 활용 방안 마련
 - 대학자체평가를 위해 타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자체평가추진실무위원회의 기준별 업무분장

- 기준별 업무분장

기준	평가위원	기준	평가위원
기준1 대학의 사명과 책무	전략기획팀장 김○○	기준5 학생	전략운영팀장 이○○
기준2 교육과정	전략기획팀 이○○	기준6 교·직원	총무팀장 한○○
기준3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지원	학사운영팀장 이○○	평가 총괄(ALO)	기획조정처장 김○○
기준4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전략기획팀 성○○		

-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한 3개 팀구성



2. 자체평가의 내용

1) 자체평가 평가요소 및 평가 방법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정량지표	관련정보공시
1. 대학경영 과발전계획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1.1.1 대학발전계획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2 교육품질 개선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1.2 대학경영	1.2.1 조직과 운영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4-가. 정관
		1.2.2 재정 운용	[필수] 교육비환원을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8-가. 대학회계 예·결산 현황 8-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8-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8-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사. 적립금 현황 8-아. 기부금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8-차. 등록금 현황 9-가. 등록금 산정근거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1.2.3 감사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2.4 대학의 책무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2.2 교육운영 및 질 관리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1인당 실습비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강좌당 학생수	
3. 학사관리 및교수학습	3.1 학사관리	3.1.1 학생선발	신입생 총원율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3.1.2 학사 및 수업관리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10-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필수] 재학생 총원율	4-라. 학생 총원 현황 (편입학 포함) 4-마. 재적 학생 현황
		3.1.4 학업 성취도 평가		2-가.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3.1.5 원격수업(해당대학에 한함)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정량지표	관련정보공시
	3.2 교수학습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4. 산학협력 및평생교육	4.1 산학협력	4.1.1 산학협력활동		12-자.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12-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4.1.2 취·창업 지원	졸업생 취업율	12-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4.2 현장실습	4.2.1 현장실습 지원		12-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4.3 평생교육체제	4.3.1 평생교육 지원		
5. 학생	5.1 학생복지	5.1.1 학생복지	장학생 지급율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14-파. 안전관리 현황
		5.1.3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원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5.2 교육시설	5.2.1 도서관	1인당 자료구입비	13-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교사확보율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5.2.3 정보보안 지원		14-파. 안전관리 현황
6. 교·직원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6.1.1 인사관리	[필수] 전임교원 확보율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14-사. 직원 현황
		6.1.2 역량 개발		
		6.1.3 연구	교원 연구실적	7-가.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 12-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6.2.1 처우 및 복지	교원 급여수준 직원 급여수준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3. 자체평가의 방법

- 1)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제시한 기관평가인증제 편람(2021학년도)을 바탕으로 기관평가인증에 필요한 각 평가요소의 인증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역량을 객관적인 자체평가를 통하여 충족(Y)/보완(C)/미충족(N) 여부로 판단함
- 2) 모든 평가방법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우선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일부 정성적 평가요소에 정확성, 타당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3) 정성평가와 정량적 정성평가 방법의 적용 비율 6.3:3.7 구성 **(인증원 평가인증 기준)**
 - 정성평가 요소(□) - 19개 (전체 평가요소의 63%)
 - 정량적 정성평가 요소(▲) - 11개 (전체 평가요소의 47%)
 - 필수평가요소 - 4개 (정량적 정성평가방법 적용)

4. 자체평가의 절차

- 1) 우리 대학은 자체평가를 위한 절차로 기본계획 수립, 항목개발 및 선정, 안내 및 자료수집, 평가자료 검증 및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심의 및 자문, 평가결과 확정, 평가인증 심사 그리고 결과의 활용 등과 같이 9단계를 통하여 진행함
- 2) 자체평가 절차

구분	주요 사항
① 기본계획 수립	·목적, 추진방향 설정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자체평가실무위원회, 전략기획팀) ·추진절차 및 일정 수립
② 항목개발 및 선정	·평가지표 개발 및 선정 ·평가기준 및 방법 확정
③ 안내 및 수집자료	·부서 설명회(평가안내) ·부서별 평가자료 입력 및 근거자료 확인
④ 평가자료 검증 및 분석	·자체평가 결과 검증 ·증빙(근거)자료 검토
⑤ 결과보고서 작성	·영역별 결과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비교 및 분석 및 영역별 판정 조율회의 ·평가결과 보완사항 확인
⑥ 심의 및 자문	·자체평가 위원회 검토 ·평가결과 심의 및 자문
⑦ 평가결과 확정	·자체평가보고서 완성 및 확정(총장 승인) ·평가결과 담당부서 배포
⑧ (전문대학)평가인증 심사	·서면평가 보고서 제출 ·현장평가(비치자료 등의 기록물 관리, 면담자 준비 등)
⑨ 결과 공개 및 환류	·자체평가 결과 공개 ·결과에 따른 환류(대학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 개선 및 보완 노력)

제Ⅲ장 자체평가 결과

1. 평가결과 총괄

1) 총 6개 기준, 13개 세부기준, 30개의 평가요소 모두 충족 판정함

기준	세부기준	평가요소	평가방법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Y	C	N	P
기준1. 대학경영과 발전계획	1.1 대학발전계획과 교육품질	☐ 1.1.1 대학발전계획	정성	○			
		☐ 1.1.2 교육품질 개선	정성	○			
	1.2 대학경영	☐ 1.2.1 조직과 운영	정성	○			
		▲ 1.2.2 재정 운용	정량적 정성	○			
		☐ 1.2.3 감사	정성	○			
		☐ 1.2.4 대학의 책무	정성	○			
기준2. 교육과정	2.1 교육과정 개발	☐ 2.1.1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정성	○			
	2.2 교육운영 및 질 관리	▲ 2.2.1 전공교육 운영과 평가	정량적 정성	○			
		☐ 2.2.2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운영과 평가	정량적 정성	○			
기준3. 학사관리및 교수학습	3.1 학사관리	▲ 3.1.1 학생선발	정량적 정성	○			
		☐ 3.1.2 학사 및 수업관리	정성	○			
		▲ 3.1.3 재학생 등록유지율	정량적 정성	○			
		☐ 3.1.4 학업 성취도 평가	정성	○			
		☐ 3.1.5 원격수업(해당대학에 한함)	정성	○			
	3.2 교수학습	☐ 3.2.1 교수학습 지원과 평가	정성	○			
기준4. 산학협력및 평생교육	4.1 산학협력	☐ 4.1.1 산학협력활동	정성	○			
		▲ 4.1.2 취·창업 지원	정량적 정성	○			
	4.2 현장실습	☐ 4.2.1 현장실습 지원	정성	○			
	4.3 평생교육체제	☐ 4.3.1 평생교육 지원	정성	○			
기준5. 학생	5.1 학생복지	▲ 5.1.1 학생복지	정량적 정성	○			
		☐ 5.1.2 학생활동 및 안전관리	정성	○			
		☐ 5.1.3 학생 진로 및 심리상담	정성	○			
		☐ 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 지 원	정성	○			
	5.2 교육시설	▲ 5.2.1 도서관	정량적 정성	○			
		▲ 5.2.2 교육시설의 확보 및 유지	정량적 정성	○			
		☐ 5.2.3 정보보안 지원	정성	○			
기준6. 교·직원	6.1 교·직원 인사관리 및 역량개발	▲ 6.1.1 인사관리	정량적 정성	○			
		☐ 6.1.2 역량 개발	정성	○			
		▲ 6.1.3 연구	정량적 정성	○			
	6.2 교·직원 처우 및 복지	▲ 6.2.1 처우 및 복지	정량적 정성	○			

2. 기준별 세부평가결과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1	1.1	1.1.1	1.1.1.1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2. 정보공시 14-가. 정관 3. 정보공시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4. 대학의 사명 홈페이지 탑재자료 5. 대학요람 6. 대학의 사명 구성원 공유 자료 7. 대학의 설립이념 자료 8.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9. 교육목표 수립 시 구성원 의견수렴 자료 10. 교육목표 평의원회 심의, 이사회 승인 자료 11. 교육목표 공유 노력 자료	1. 대학은 설립이념과 부합한 사명과 교육목표를 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음을 확인함 대학의 교육목표는 비전 선포식, 대학 홈페이지 게시, 중장기발전계획 배포, 대학 홍보물품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가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있음을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p.11 비전 및 전략체계도)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사명이 대학의 설립이념 및 설립목적, 대학의 특성 등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대학 설립이념 자료 및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p.11 비전 및 전략체계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대학의 사명은 대학 홈페이지, 대학요람, 중장기 발전계획(정보공시 11-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들과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대학은 최초 교육목표 수립 시 교수, 직원, 학생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였고, 대학평의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표하고 있음
1	1.1	1.1.1	1.1.1.2	○				1. 정보공시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2. 2019~2021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DREAMIN2021 3. 2016~2020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DREAM+2020 4. 2016~2020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5. 대학 발전계획 수립 관련 자료 6. 대학발전계획의 이행 자료 7. 구성원 및 산업체 의견 수렴 자료 8. 교무위원회 회의록 9.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0. 법인이사회 회의록	1. 2016~2020년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한 후, 2016~2020년 발전계획의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를 통해 발전계획을 2017년 DREAM+2020, 2018년 DREAM ⁱⁿ 2021으로 고도화 및 재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수립된 발전계획의 이행결과는 매 학년도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및 분석 보고 내부결재 문서 등을 통해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연차별 추진내용, 재정운영계획, 성과지표 및 달성수준 등 이행결과를 확인함 2.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은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 교직원 만족도 조사, 산업체 만족도 조사 및 행정부서 회의 결과를 발전계획의 대내외 환경분석 자료에 반영함을 확인하였으며, 교무위원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11. 구성원 공표 자료 12.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점검 결 과 보고 13.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 과 및 분석 보고	회 검토,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 확정 시행하 고 있음을 해당 회의록을 통해 확인함 3.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 홈페이지, 대학 정보공시(11-가) 등에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여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 고 있으며, 매년 중간점검과 연차평가를 진행하여 성과지표의 달 성도와 재정운영계획 등을 평가하고 환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 족 판정함
1	1.1	1.1.1	1.1.1.3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2. 정보공시 11-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3.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DREAM ^{IN} 2021 4.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DREAM+2020 5.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6. 대학 발전계획 수립 관련 자료 7. 대학발전계획의 이행 자료 8. 구성원 및 산업체 의견수렴 자료 9. 교무위원회 회의록 10.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1. 법인이사회 회의록 12. 구성원 공표 자료 13. 대학자체평가 규정 14.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 지침 15. 교육품질관리 규정 16.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중간점검 결 과 보고 17.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 과 및 분석 보고 18. 대학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19.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20. 행정부서 자체평가보고서 21. 행정부서 운영계획서 22. 학과 자체평가보고서(학과 CQI)	1. 중장기 발전계획의 실적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내에 VI.전략실행 및 성과관리체계를 포함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학칙, 대학자체평가 규정,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 지침, 교육품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부서별(학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 며, 대학차원에서 기획조정처와 대학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중간점검 및 연차별 평가를 통해 수행내용을 평가하고 있음을 대 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3. 연도별 자체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하여 차기 년도 부서(학과)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하 고 있음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행정부서 자체평가보고서, 행정부서 운영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23. 학과 운영계획서	
1	1.1	1.1.2	1.1.2.1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정보공시 14-가. 정관 3.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 5. 학칙 제19장 제85조 6. 대학자체평가규정 7. 교육품질관리규정 8.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 9. 교육만족도조사 규정 10. 교수업적평가 규정 11. 교원 강의평가 운영 규정 12.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1. 대학은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평가·개선하기 위해 학칙, 대학자체평가규정, 교육품질관리규정,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 교육만족도조사 규정, 교수업적평가 규정, 교원 강의평가 운영 규정, 특성화사업 운영규정, 특성화사업 자체평가규정,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규정 등의 관련 규정, 지침을 갖추어 준수하고 있음 확인함 2. 대학은 교육품질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평가를 위한 전담 조직(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추진실무위원회, 부서 운영위원회, 학과 교육과정 개발위원회, 교육품질관리위원회, 직무능력성취도평가위원회, 교육만족도위원회,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강의평가 운영위원회, 외부 회계감사기관, 특성화(혁신지원) 사업추진위원회, 특성화(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을 구성하여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3.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의 발전전략 전략과제 수립 시 기관평가인증 기준별 평가요소,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의 외부평가 지표와 연계한 중장기 발전전략 20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성과관리지표를 선정함으로써 각 평가지표들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음. 또한 대학의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는 교육목표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본으로 각 부서별 핵심성과지표를 지정하여 부서운영계획 수립 시 교육목표, 발전계획, 외부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부서자체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기년도 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있으므로 충족 판정함
1	1.1	1.1.2	1.1.2.2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특성화사업 운영규정 3. 특성화사업 자체평가규정 4.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5.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규정	1. 대학은 학칙 제85조(자체평가)에 따라 자체평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대학자체평가 규정, 중장기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 교육품질관리규정에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의 사명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품질의 보장 및 개선을 위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6.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 보고서 7.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3차년도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 8.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9. 대학 기본역량진단 자체진단보고서 10. 부서 자체평가보고서 11. 학과 CQI 보고서 12.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13.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14. 교수업적평가 결과 보고서 15. 강의평가 결과 보고 16. 강의평가 결과 분석 보고 17. 회계감사 결과 보고 18.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보고서 19.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록 20. 대학 교육품질관리 개선 실적(교수지원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등 11건)	2. 대학은 자체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학 차원에서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과제별 해당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개선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관련 대학 교육품질관리 개선 실적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중장기 발전계획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라 매년 부서별(학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과제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차원에서 기획조정처와 대학자체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중간점검 및 연차별 평가를 통해 수행내용을 평가하고 있음을 대학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연도별 자체평가 결과를 구성원에 공유하여 개선사항에 대하여 차기년도 부서(학과)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행정부서 자체평가보고서, 행정부서 운영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1	1.1.2	1.1.2.3	○				1. 교육만족도 조사 관련 규정 및 지침 2.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대상별) 3. 교육만족도 조사 추진계획 4. 교육만족도 문항개발 및 타당성 검증 실적 5. 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결재문서 6. 교육만족도 개선 계획 자료 7. 행정부서 운영계획서 8. 교육만족도 개선 활동 결과 보고 9. 행정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1. 대학은 교육만족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전 분야에 대해 재학생, 산업체, 졸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만족도 시행은 계획수립, 설문도구 개선, 조사 시행 및 환류 단계로 매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2. 대학은 교육만족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전 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재학생, 산업체, 졸업생, 학부모, 구성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대상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기 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10. 대학운영계획서	3. 대학은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만족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결과 보고서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 환류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 과제에 대해 연도별 부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부서 자체평가를 통해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 주기적으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을 적극 이행하고 있음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1	1.2.1.1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정보공시 14-가. 정관 3. 직제규정 4. 사무분장규정 5. 위임전결규정 6. 제규정관리규정 7. 업무편람 8. 문서수신/발신관리(통합정보시스템)	1. 대학의 사명과 비전, 교육목표 달성,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정관, 학칙,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에 대학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직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처, 4개 부속기관, 3개 부설기관, 19개 학과로 대학의 조직을 적절히 구성하고 있음을 직제규정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정관, 학칙, 사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업무편람에 각 조직의 구성, 권한, 책임범위, 역할분담, 전결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관련 규정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대학 통합정보시스템(문서수신/발신관리)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1	1.2.1.2	○				1. 제규정 관리 규정 2. 교무위원회 회의록 문서철 3. 규정 확정 시행 내부결재 문서철 4. 대학 홈페이지 (규정집, 제규정 의견수렴 게시판) 5. 문서처리규정 6. 문서관리 및 보존지침 7. 문서번호에 관한 지침 8. 문서수신/발신관리(통합정보시스템)	1.대학은 업무 및 조직의 내용이 반영된 제규정 번호체계로 운영하고 있음을 제규정관리규정을 통해 확인하였고, 이 제규정 관리규정에 따라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함 2. 대학은 제규정관리규정에 명시한 제·개정 및 폐지 절차에 따라 입안부서에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안하고, 제규정 관리부서 심사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확정 및 공포하는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제규정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을 교무위원회 회의록 문서철, 규정 확정 시행 내부결재 문서철을 통해서 확인함. 특히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과정에서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심의 이전 대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학 홈페이지 제규정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3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규정 심의 이후 대학 홈페이지 규정집을 통해 대학 구성원에게 공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행정부서의 모든 결재문서는 문서처리규정에 의해 생성되며,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책임과 권한에 따라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부서 업무별 문서 보존 기간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는 총장의 결재를 통해 파기하고 있음. 또한 행정부서의 모든 내부결재 문서는 문서번호 구성체계 대로 문서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1	1.2.1.3	○				1. 정보공시 1-가. 학교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정보공시 14-가. 정관 3. 대학평의원회 규정 4.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6. 교무위원회 규정 7.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 8.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9.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0. 교무위원회 회의록 11. 교직원 회의 자료 및 대학발전 제안 자료 12. 이사회 회의록 13.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록 및 학과구조개혁위원회 회의록	1. 대학은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비롯해 교무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위하여 각각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를 규정에 따라 준수하여 위촉하고 있음을 주요 위원회 구성 및 위촉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대학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의 위촉과 사유 발생 및 주기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교무위원회 회의록, 교직원 회의자료, 이사회 회의록,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함 3. 학사구조 개편에 대하여 대학은 학사 구조 개편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해당규정에서 제시한 절차에 준용하여 매년도별로 학과 평가 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대상학과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과의 학과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학과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항을 검토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마련된 최종결과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법인 이사회 제청 및 교육부 보고를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고있음을 확인하여 충족판정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1	1.2	1.2.2	1.2.2.1	○				1. 정보공시 8-라. 예·결산 현황 2. 정보공시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3.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대학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포함) 4.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보고 내부결재 5.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조치 홈페이지 공개 내부결재 6. 부서별 운영계획서 7. 법인 및 대학 예산 편성 및 운용지침 8. 부서, 학과 예산요구서 및 부서 사업계획서 9.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0. 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11. 이사회 회의록 12. 예·결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 13. 교비회계 추가경정 사전 수요조사 시행 내부결재 14. 재무회계 규정 15. 중장기발전계획 연차평가 보고 16. 행정부서 운영계획서	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전략과제별 재정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실행과제별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연차평가를 통해 매년 발전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을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음을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및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함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조치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부서별 운영계획서 및 부서, 학과 예산요구서 및 부서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에는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진행하였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대학평의원회, 대학등록금 심의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구성원의견이 반영된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음을 관련 위원회(대학평의원회,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대학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일정에 따라 예산계획이 수립·변경되었음을 법인 및 대학예산 편성 및 운용지침 및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 위원회, 이사회 등 관련위원회 회의록과 예·결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을 통해 확인하였고,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결산 회계감사 시행 및 일정보고와 예·결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을 통해 확인하였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 결산자료를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홈페이지 예·결산 공고 게시판을 통해 1년 이상 공시하고 있음을 예·결산 통보, 제출 및 공개 공문과 대학홈페이지예·결산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함 3. 대학은 재무회계규정, 사부분장규정, 예산규정을 정비하여 예산의 수립과 통제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처 전략운영팀, 예산 집행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에 관한 업무는 사무처 회계재무팀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리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의 조항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규정상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며, 매년 중장기발전계획의 재정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차년도 부서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2	1.2.2.2	○				1.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2.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3.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4. 교비회계 결산서 5. 산학협력단 결산서 6. 교육비 환원을 산출근거(산출식)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2018학년도 120.5%, 2019학년도 121.9%, 2020학년도 113.9%로 인증평가 충족기준인 100%이상이므로 충족하고 있음을 정보공시 8-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8-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및 제출자료인 교육비 환원을 산출근거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2	1.2.2.3	○				1. 정보공시 14-바,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2.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학 수익사업의 다변화 방안 연구에 대한 결과 보고 내부결재 3. 대학발전기금관리규정 4. 대학발전기금 우수사례 검토 보고 내부결재 5. 대학발전기금 홍보 및 유치 활성화 계획(안) 시행 내부결재 6. 발전기금 기부자 및 기부내역 안내 계획(안) 시행 내부결재 7. 발전기금 기부목록 8. 발전기금 모금행사 결과보고 내부결재 9. 발전기금 기부약정서_현금 및 현물 10. 연도별 단기수강료 수입 현황 11. 시설물관리규정 12. 연도별 대관 현황 보고 13. 사업별 사업교부금 관련 공문 및 내부결재 14. 산학협력단 대학 전출금 지출 결의서 15. 2017-2019학년도 보조금 수입 내역	1. 대학 발전기금 활성화, 대학 시설물에 대한 대여 사용료 수입 확대,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외 사업 활성화, 국고보조금 등을 통한 재학생 장학혜택 증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를 통한 교육 활동 전개, 법인의 경상비 및 법정부담전입금과 산학협력단 전입금 확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대학발전기금관리규정, 시설물관리규정 및 사업별 수입 관련 내부결재 및 결산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수익사업 다변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확인함 가.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사업 -2019년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신규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사업참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사업 수행 중임. -참여학과 : 세무회계학과 / 자격명 : 전산회계운용사2급 나. 혁신지원사업 3유형(후진학선도형) -2020년도부터 대림대학교(주관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교(협력대학)과 함께 혁신지원사업 3유형(후진학선도형)을 2021년도까지 운영함 2. 대학은 등록금 외 다양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16. 법인 전입금 수입 결의서 및 공문 17.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사업계획서 18. 혁신지원사업 3유형(후진학선도형) 사업계획서	2018학년도 18,716,955천원, 2019학년도 18,941,260천원, 2020학년도 18,638,032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발전기금 기부 목록, 연도별 단기수강료 수입 현황, 연도별 대관 현황 보고, 사업별 사업교부금 관련 공문 및 내부결재, 산학협력단 대학 전출금 지출 결의서, 보조금 수입 내역, 법인 전입금 수입 결의서 및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자체적으로 대학발전기금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고숙련일학습병행제(P-Tech) 2019학년도 60,302천원, 2020학년도 132,920천원, 2021학년도 119,231천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혁신지원사업 3유형(후진학선도형) 2020학년도 200,000천원, 2021학년도 213,460천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함으로써 대학재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함
1	1.2	1.2.3	1.2.3.1	○				1. 법인 정관 2. 감사규정 3. 사무분장규정 4. 위임전결규정 5. 재무회계규정 6. 학교교비 결산 회계감사 시행 내부결재 7. 대학 내부감사보고서 8. 대학 외부감사보고서 9. 결산서 제출 내부결재 및 공문 10. 산학협력단 정관 11. 산학협력단 내부감사 보고서 12. 산학협력단 외부감사 보고서 13. 산학협력단 결산서 제출 공문 14. 감사규정 15. 사무분장규정 16. 위임전결규정	1. 대학은 「법인 정관」을 통해 감사의 임기와 직무 등을 명시하였고, 자체적으로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등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인회계사가 포함한 법인감사 2인으로부터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학교교비 결산 회계감사 시행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하였고,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및 재무회계규정 제38조에 따라 내부감사 이외에 학교법인과 독립한 회계 법인에 의해 외부회계감사를 수검 받고 있음을 확인함. 또한,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감사의 임기 직무를 명시하고,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7조(감사)에 의해 산학협력단의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결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관할청에 결산서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산학협력단 정관, 산학협력단 내외부감사 보고서, 산학협력단 결산서 제출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제정된 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제5조(감사부서)를 통해 정기감사의 경우 사무처, 수시감사의 경우 기획조정처로 담당부서를 정하고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 상에 해당부서의 감사관련 업무를 명시한 사항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 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3. 대학은 제정된 감사규정상 제17조(신고자 보호) 조항을 마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고자에 대한 처우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대학이 제정한 감사규정 상의 정기감사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수시감사의 경우 감사규정 제13조(감사결과보고), 제14조(시정요구), 제15조(시정조치 확인), 제16조(감사대상부서의 이의신청)의 조항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1	1.2	1.2.4	1.2.4.1	○				1. 정보공시 10-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2. 윤리헌장 3. 윤리강령 4. 교직원복무 규정 5. 취업규칙 6. 연구윤리규정 7. 기관생명윤리 규정 8.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9. 연구 및 생명윤리 교육실적 10. 성희롱, 성매매 예방 관련 교육실적 1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12.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실적 13. 기타 의무교육(갑질 등) 교육실적	1. 대학은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 교직원 복무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대학은 대학 경영 및 학사운영에서의 행·재정적 부당행위, 정보공시 위반, 연구비 및 국고 집행에서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성희롱 등 윤리적 부분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없음을 '정보공시 10-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대학 구성원은 교직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공정히 완수할 것과 직무 수행에 있어 서비스 정신, 품위유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또한 연구윤리규정과 기관생명윤리 규정을 통하여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였으며, 대학에서의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대학 구성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대학은 개인정보 및 대학의 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대학정보의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안 교육을 통하여 엄격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1	1.2	1.2.4	1.2.4.2	○				1. 정보공시 12-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2. 사회봉사단 운영규정 3. 사회봉사단 교직원 인사발령 내부결재(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포함) 4. 사회봉사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5. 사회봉사단 운영계획서 6. 사회봉사단 자체평가보고서 7. 마일리지 봉사 현황 8. 사회봉사단 사회봉사활동 실적 9. 사회봉사단 예산집행내역서	1. 대학은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학의 사회봉사활동의 목표와 취지에 맞게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회봉사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에게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사회봉사단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진방침(정책)을 설정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또한 재학생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봉사 마일리지 장학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은 추진방침과 목표를 바탕으로 수립한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사회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수립된사회봉사단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국내 9건, 국외 1건, 2019학년도 국내 30건, 국외 1건, 2020학년도 국내 2건, 2021학년도 국내 4건의 봉사 실적이 있음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음.
2	2.1	2.1.1	2.1.1.1	○				1. 학칙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3. 대학교육 목표와 학과 교육목표 4. 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5. 21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6. 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지침 7. 교육과정 위원회 위촉 8.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 9.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촉 10.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록 11.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12.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3. 학과 CQI보고서 14.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15.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 16. 대학평의회 규정 17. 대학평의회 회의록	1. 대학은 교육품질을 보장하고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칙」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과정은 「학칙」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개발(개편)되며, 학생과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품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개편)하고 있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정책은 대학의 사명(Mission) 및 교육 목표와의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과정 개발, 편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을 지원하고 있음 2.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16조, 32조에 따라 매년 재학생, 졸업생과 산업체의 교육과정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전반을 평가하고 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시행, 분석하여 차년도 학과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과는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산업체 요구의 반영 및 산업환경 변화 분석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전문가(SME)를 학과 교육과정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있음을 확인함 3.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한 학과 차원의 교육과정 위원회, 대학 차원의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교육과정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과 교육과정 위원회는 매 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행하여 '교육과정 품질 관리 자체점검 보고서' 및 '학과 CQI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반영시켜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개편) 사항을 심의하고 편성하여 학과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음
2	2.1	2.1.1	2.1.1.2	○				1. 학칙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3. 대학교육 목표와 학과 교육목표 4. 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5. 21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6. 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지침 7. 교육과정 위원회 위촉 8.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규정 9.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위촉 10.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록 11.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12.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3. 20,21학년도 교육과정 품질관리 자체 점검 보고서 14. 20,21학년도 학과 CQI 15. 20,21학년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16.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매뉴얼 17.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18.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9.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 지침 20.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21.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 운영 지침	1. 대학은 교육품질을 보장하고 대학의 사명 및 교육목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칙」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의 통합교양 교육과정과 학과 교양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학과의 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 등)관련 사항은 학과 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평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대학에서 개설 및 운영하는 통합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 등) 관련 사항은 대학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심의와 대학평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있음 2. 우리 대학의 4대 핵심 역량(관계성, 성실성, 창의성, 전문성)과 대학의 사명,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바탕으로 핵심 교양 교육역량을 확립하였고, 기초핵심능력(직업기초능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양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3.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제16조, 32조에 따라 매년 재학생, 졸업생과 산업체의 교육과정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전반을 평가하고 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를 시행, 분석하여 차년도 학과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과는 학과별 교육과정 개발(개편) 시 산업체 요구의 반영 및 산업환경 변화 분석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전문가(SME)를 교과과정 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22.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록	있음을 확인함. 4.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위한 학과 차원의 교육과정 위원회, 대학 차원의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교양 교육과정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과 교육과정 위원회와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는 매 학년도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행하여 '교육과정 품질관리 자체 점검 보고서' 및 '학과 CQI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며,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반영시켜 교육과정 개발(개편)을 시행하였음
2	2.2	2.2.1	2.2.1.1	○				1. 학칙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3. 학사내규 16조 4.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5. 교과과정표 6. 교과목 강의계획서 7. 학과홈페이지 8. 강의계획서 조화화면	1. 대학은 전공교과 편성 관련 규정(또는 지침)으로 「학칙」 제32조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9조에 따라 전공교육과정을 학과 교육과정의 70-95%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이 중 30% 이상은 실험 또는 실습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대학은 「학사내규」 제16조에 따라 교과목의 내용, 수업방식, 평가방법 등을 강의계획서를 통해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보고서, 학과 홈페이지 등에서도 직무능력, 직무수행 내용 및 수준, 평가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음 3. 대학은 각 교과목별로 강의계획서를 갖추고 있으며, 강의계획서에는 학과 교육목표, 교과목 학습목표, 성취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교육장소, 교재, 평가방법 및 내용, 주차별 학습내용 등이 기술되어 있고, 학생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2	2.2.1	2.2.1.2	○				1.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및 관리 운영 규정 2. 실험실습기자재폐기처리규정 3. 실험실습실운영규정 4. 연구실안전관리규정 5.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6. 통합정보시스템자산시스템보고서(기자재관리대장-방사선과) 7. 실험실습 기자재 신청서	1. 대학은 실험실습기자재의 도입과 관리를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 도입 및 관리 운영 규정」을 구비하고, 불용처리과정을 정의하는 「실험실습 기자재 폐기 처리 규정」, 「실험실습실 운영 규정」 등을 보유하고 실험실습 기자재의 신청, 유지, 관리,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해당 규정을 통해 확인하였고, 「실험실습 기자재 신청서」를 통해 실험실습 기자재 신청을 받고 신청한 실험실습기자재에 대해 기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실험실습 기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8. 실험실습기자재선정위원회회의록 9. 실험실습기자재구입내역 10. 통합정보시스템자산시스템보고서(기자재수리내역) 11.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1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13. 연구실 일일 일지 등 14.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15. 교육훈련 관련	입 내역」를 통해 확인하여 총족 판정함 2. 대학은 보유한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자재에 대한 신청, 유지, 관리, 개선을 이행하고 있음을 대학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 「자산관리 시스템」 및 「통합정보시스템 자산시스템 보고서(기자재 관리대장-방사선과), (기자재 수리내역)」 과 「실험실습 기자재 신청서」, 「실험실습 기자재선정위원회 회의록」,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내역」을 통해 확인하였고, 통합정보시스템 및 바코드를 통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3. 대학은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사무처 총무팀을 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담당교수 및 연구소장을 연구실책임자로 하고, 각 학과 조교와 연구소의 조교(직원)을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매년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여 실험실습실을 개선하고 있으며 년 3회 자체 점검과 담당자 일일안전점검을 통하여 실험실습실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매 학기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증진시켜 실험실습실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함.
2	2.2	2.2.1	2.2.1.3	○				1. 대학정보공시 4-마. 재적 학생 현황 2. 회계연도결산서(교비회계) 3. 회계연도결산서(산학협력단회계) *18-20년 평균 951,442,651원 근거:회계결산서(교비, 산학협력단)	1. 학생 1인 당 실험실습비(산단회계 포함)는 2018학년도 248천원, 2019학년도 210천원, 2020학년도 143천원으로 평가기간 내 평균 175천원으로 기관평가인증 기준 157천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정보공시 4-마, 교비회계 및 산단회계 결산서를 통해 확인하여 총족 판정함
2	2.2	2.2.1	2.2.1.4	○	○			1. 수업운영지침 2. 담당 과목 및 시간승인 3. 담당 과목 시수 조정 보고	1. 전공과목의 강좌당 학생 수는 「수업운영지침」 제8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1학기 30.7명, 2학기 27.9명, 2021학년도 1학기 28.5명, 2학기 27.7명으로 매 학기 평균 33명 이하로 유지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증 기준인 평균 33명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총족 판정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2	2.2	2.2.1	2.2.1.5	○				1. 학칙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3. 20,21학년도 학과 CQI 4. 20,21학년도 교육과정 품질관리 자체 점검 보고서 5. 20, 21학년도 대학 교육품질관리 보고서 6. 20, 21학년도 학과 운영계획서 7.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록 8.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9.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0. 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11. 21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12.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록 13.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1.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제31조~제33조의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교과목 CQI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선순환적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대학은 수요자 요구조사 결과 및 학과 CQI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차년도 학과 운영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선순환적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 3. 대학은 전공교육 운영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학과는 교과목 CQ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 학년도 1학기에 중간점검을 시행하고, 2학기 성적처리 종료 후 학과 CQI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연도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내용에 대한 점검, 평가, 개선, 환류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학과 교육과정 개발(개편), 운영 등에 반영하고 있음
2	2.2	2.2.1	2.2.1.6	○				1. 학칙 2. 학사내규 3. 집중수업운영지침 4. 사회맞춤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지침 5. 전과규정 6. 복수전공운영지침 7. 학사학위 전공심화 운영규정 8. 원격수업 운영 규정 9. 현장실습운영 규정 10.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 규정 11.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2.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록	대학은 1.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화(집중수업, 사회맞춤형 주문식교육과정, 계절수업), 2.학습기회의 확대(전과제도, 복수전공제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3.교육방법의 다양화(원격수업, 현장실습, 조기취업자 교육과정 이수제도) 등 지속적인 교육품질의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음. 대학은 교육과정 수요도 만족도 조사 및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새로운 학사제도를 탐색하고 도입 및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학사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2	2.2	2.2.2	2.2.2.1	○				1. 학칙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3.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1. 대학은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 4대 핵심 교양 교육역량(기초교육, 인성공감, 창의융복합, 전공기초)을 「교양 교육과정 편성·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하고, 교육과정 편성 시 대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4. 대학 교육목표와 학과 교육목표 5.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록 6.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록 7.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8.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9. 교과과정표 10. 역량기반 통합교양 교육과정 개발(개편) 보고서	학의 사명, 교육목표 및 인재상을 고려하여 연계성을 유지하며,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의거해 교양 교육과정은 대학의 통합교양 교육과정과 학과교양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학과별 교양 교육과정은 졸업학점의 5-30%범위 내에서 직업기초능력 교양 교과목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2. 학과 교양 교육과정은 학과별 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대학 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통합교양 교육과정은 대학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 심의위원회 심의와 대학 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3. 대학의 교양교육은 통합교양과 학과 교양 교과목으로 2020학년도 1학기 64개, 2학기 51개 교과목, 2021학년도 1학기 71개, 2학기 51개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2	2.2.2	2.2.2.2	○				1. 학칙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3. 대학 교육목표와 학과 교육목표 4.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5.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록 6.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록 7.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록 8.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9. 역량기반 통합교양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10.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1. 20,21학년도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2. 통합교양 CQI 보고서 13. 통합교양 교육품질관리 자체점검 보고서 14. 직무능력성취도 결과 보고 15. 강의평가 결과보고	1. 대학은 교육과정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운영계획 수립 하에 운영하여 평가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분석된 개선사항을 환류하는 교육과정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 실행하고 있으며,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 평가, 개선사항 도출 및 환류에 관한 사항은 학과 교육과정 위원회, 교양 교육과정 위원회, 교육과정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있음 2. 대학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 학년도 1학기 교과목 CQ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점검을 시행하여 학과 교육과정 CQI 중간보고서(교육과정 품질관리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2학기 성적처리 종료 후 당해 연도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내용에 대한 점검·평가·개선·환류를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종합 CQI 내용이 포함된 학과 운영 결과보고서(학과 CQI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업기초 및 교양교육을 평가하였으며, 교육과정 품질관리 자체점검 보고서 및 학과 CQI 보고서에서 도출된 개선과제와 교육과정 수요자 만족도 조사, 강의평가, 성취도 결과 등을 종합하여 차년도 학과 운영계획서 및 교육과정 개발(개편)보고서에 반영하여 환류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3	3.1	3.1.1	3.1.1.1	○				1. 대학정보공시(3-가)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 2. 모집요강(별책) 3. 사정위원회 규정 4. 입학전형관리규정 5.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6.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7. 입시관련 회의록(별책) 8. 위탁교육심의위원회 규정 9.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1. 대학은 대학정보공시(3-가), 대학 입시홈페이지, 모집요강에 입학전형시 차별하지 않는 입학정책을 반영하여 모집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입학전형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 입학전형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사정위원회, 위탁교육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의 주요사항을 계획하고 심의함 3.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을 통해 출제 또는 평가시 선행학습으로 인한 차별요인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 규정을 통해 입학전형시 공정성확보 및 부정방지 등 전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입생 모집요강의 대학유의사항을 통해 차별 방지 및 입학정책 준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1	3.1.1.2	○				1. 대학정보공시 4-다(신입생 총원 현황)	1. 대학은 대학정보공시 4-다(신입생 총원 현황)의 확인결과 2019학년도 입학정원 1,336명 모집에 1,336명, 2020학년도 입학정원 1,336명 모집에 1,336명, 2021학년도 입학정원 1,336명 모집에 1,268명 총원하여 2019학년도~2020학년도 신입생 총원을 100.0%, 2021학년도 94.9%로 인증 충족 요건인 91%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1	3.1.1.3	○				1. 신입생 입시설문 조사 결과보고 2. 입시결과보고서 3. 입시관련 회의록(별책)	1. 대학은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통해 입학전형 전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당해연도의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하여 입시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분석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입시결과 분석보고서, 신입생 입시설문결과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한 차년도 입학전형 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2	3.1.2.1	○				1. 학칙 2. 학사 내규 3. 수업운영지침	1. 대학은 학칙, 학사내규, 수업운영지침을 통해 출석의무, 출석인정, 시험, 성적, 출결기재, 출석결격 등 출결관리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평가지 출석을 10~20% 이내로 반영하도록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4. 휴·보강 운영지침 5. 교수업적 평가규정 6. 학과장 회의자료 7. 학사관리 안내 내부결재 8. 전자출결시스템 (출석부) 9. 결석계 및 출석인정원(학기별 건본 1부) 10.보강계획서 및 보강결과보고서 11.출강일지 12.수업운영결과 보고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매 학기 초 학과장 회의, 학사관리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휴·보강 준수를 안내하고 있으며, 공휴일 및 수업결손 시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며, 휴·보강 위한 교원의 경우 교수업적평가에 감점으로 반영하고 있음. 3. 대학의 수업 관련 규정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으며, 강의계획서(평가계획서)에 출석 성적반영 비율을 기재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있음. 출석부 및 휴·보강 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출석결격자는 성적입력이 불가하며, 휴·보강을 포함한 수업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는 매월 수업운영결과보고서를 통하여 관리함
3	3.1	3.1.2	3.1.2.2	○				1. 학칙 제37조(교수시간) 2.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지침 제2조, 제4조, 제5조 3. 수업운영 지침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4. 강사 인사규정 제17조 5. 강사료 지급 지침 제3조, 제4조 6. 2020~2021학년도 전임교원 초과강의로 및 강사 시간강의로 내역 보고(별책)	1. 대학은 학칙,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지침, 강사 인사규정, 강사료 지급 지침 등 교원의 강의시수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2. 대학은 관련 규정에 의거 책임시간 이상 강의에 대하여 초과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책임 강의시수, 강의시간 준수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여 강의시수를 관리 및 평가하고 있음
3	3.1	3.1.2	3.1.2.3	○				1. 학칙 제38조(수강신청), 제45조(학사경고) 2. 학사내규 제10조(수강신청) 3. 수업운영 지침 제6장 수강신청 4. 재수강 운영지침 5. 성적관리지침 제7장 학사경고	1. 대학은 학칙, 학사내규, 수업운영지침, 재수강 운영지침 등 학생의 수강신청 및 수강지도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 2. 수업운영지침 제28조(수강지도)를 통해 지도교수의 수강신청 지도 사항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수강 신청을 지도 및 관리하고 있음 3. 대학은 학칙, 수업운영지침, 성적관리지침 등 학사경고 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적관리지침 제20조(학사경고) 조항을 통해 학사경고의 기준 및 지도,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학사경고를 관리하고 있음
3	3.1	3.1.3	3.1.3.1	○				1. 대학 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2. 대학 정보공시 4-마. 재학생 총원율	1. 대학 정보공시 “4-다. 신입생 총원 현황, 4-마. 재학생 총원율”을 확인한 결과,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2020학년도 95.8%, 2021학년도 93.9%로 인증 기준인 80% 이상으로 충족 판정함
3	3.1	3.1.3	3.1.3.2	○	○			1. 전과 규정, 재입학 운영지침	1. 대학은 전과제도 운영, 학생중심의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대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2. 오프라인(대학생활적응검사Ⅰ,Ⅱ,Ⅲ) 온라인(종합심리, 진로적성) 검사프로그램 시행 및 결과보고 외 5건 3. 재입학 대상자 재입학 권유(홈페이지 모집공고) 4. 전공동아리 운영위원회 회의 및 운영실적 5. 평생지도교수제 운영방안(안) 보고 6.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 보고 7. 학과 운영평가(CQI) 보고	학생활 적응,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학생상담센터 운영, 학업중도 포기자를 위한 재입학 제도 대학홈페이지 공고, 재학생들의 전공 능력 향상을 위한 학과별 전공동아리 운영, 평생지도교수제 등의 재학생 등록유지율 제고를 위한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대학은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차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하여 핵심 목표인 재학생 충원율 95%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또한 학과 운영평가(CQI)를 통하여 핵심 성과지표인 재학생 충원율의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학과의 강,약점 및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전과 결과, 편입학 결과, 기초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튜터링 프로그램, 전공동아리 운영 실적을 통해 연도별 실적을 확인하고 정보공시를 통해 재학생 등록유지율은 2020학년도 95.8%, 2021학년도 93.9%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3.1	3.1.4	3.1.4.1	○				1. 학칙 2. 학사내규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4.수업운영지침 5.성적관리지침 6.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	1. 대학은 학칙, 학사내규, 성적관리지침, 수업운영지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직무능력 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 등 학업 성취도 평가 관련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의계획서 작성 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2. 교육과정 및 편성지침,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강의계획서 작성 시 평가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 평가로 사전진단을 위한 진단평가, 출석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3	3.1	3.1.4	3.1.4.2	○				1. 학사내규(제27조) 2. 성적관리지침(제4장, 제5장) 3.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공고 4. 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5. 향상·심화 교육 기안문 6. 학사경고자 특별지도 면담 관련 내부결재	1. 대학은 학사내규, 성적관리지침에 성적열람 및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준수하고 있음 2. 성적열람 및 이의제기 관련 내용을 시험 종료 2주 전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성적열람 및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있음 3. 대학은 성취수준 미달자(직무능력 성취도 70점 미만)를 대상으로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는 해당 학생별 직무능력 성취도에 반영하고 있으며, 학기별로 향상·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학습성과 부진학생들은 학기 종료 후 특별면담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음
3	3.1	3.1.5	3.1.5.1	○				1. 원격수업운영규정	1. 대학은 원격수업운영규정, 원격(비대면)수업운영지침 등의 원격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원격 (비대면)수업운영지침 3.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위촉 결재 4.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회의록 5. 학사운영가이드 6. 학과장회의 자료 7. LMS 시스템 캡처 화면 8. 원격수업 스튜디오 사진 9.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위촉 결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관리와 운영관리를 하고 있음 2. 온라인교육혁신부를 두어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장(1인), 행정직원(1인)으로 조직과 담당 인력을 갖추고 있음 3. 대학은 학사운영가이드,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해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LMS(학습관리시스템) 시스템 구축 및 원격수업 스튜디오를 제작하여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3	3.1	3.1.5	3.1.5.2	○				1. 원격수업운영규정 2. 비대면(온라인) 원격 수업 보고 결재 3. 실시간 원격수업 결과 보고 4. LMS(학습관리시스템) 내 대리출석 방지 본인 인증 모듈 사용권 구매 5. 원격수업관리위원회 회의록	1. 대학은 원격수업의 출결관리를 위해 LMS(학습관리시스템)내에 대리출석 방지를 위한 대리출석방지 본인 인증모듈을 추가 구입하여(2차 인증) 출결관리를 하고 있음 2. 대학은 엄정한 원격수업 학사관리를 위하여 학기 초 비대면 수업 계획서 및 평가서를 제출받아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학 내 LMS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실시간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 하고 있음 3.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원격수업 관리 및 콘텐츠의 질 관리를 하고 있음
3	3.2	3.2.1	3.2.1.1	○				1. 직업교육혁신센터 규정 2. 교수학습 역량 혁신부 운영 지침 3. 사무분장 규정(제7조) 직업교육혁신센터 4. 개인별 업무분장 내부결재 5. 운영위원회 및 연구위원 위촉 및 해촉 내부결재 6. 교육과정혁신부장 위촉 결재 7.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재학생 수요조사 결과 보고 내부결재 8. 교수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재 9.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결과 10. 부서운영계획서	1. 대학은 직업교육혁신센터 규정, 교수학습 역량 혁신부 운영지침 등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교수학습 지원 조직으로 센터장(1인), 책임연구원(2인), 연구위원(3인), 행정직원(3인)으로 조직과 담당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개인별 업무분장표로 확인함 2. 매학년도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교수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요도조사를 시행하여, 교수학습지원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개별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운영계획에 의거한 프로그램 행.재정적 지원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11. 직업교육혁신센터(교수학습역량혁신부) 행·재정적 운영 프로그램 결과 내부결재 12. 교육만족도 조사	
3	3.2	3.2.1	3.2.1.2	○				1.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보고 2.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3. 국어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결과 보고 4. 국어 기초 튜터링 사업 최종 결과보고 5. 기초 수학능력 교육 결과 보고 6. 맞춤형 대상자 특강 결재 7. 자기주도 온라인 학습법 특강 8. 학습법 특강 9. 학습유형 검사 및 컨설팅 10. 학습법 경진대회 사례집 제작 배포 및 홈페이 지 게재 11. 비대면 시대 자기주도 학습법 모델 개발 결재 12. 창의 온라인 콘텐츠(특허의 모든 것) 제작 및 온라인 특강 운영 결재 13. 혁신융합교육센터 3D 프린터 특강 결재 14. MIE 4C 온라인 특강 결과보고 15. 학사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결재 16. 전공 튜터링 결재 17. 드림플러스(글로벌) 장학금 프로그램 결재 18. 전문직특화 프로그램 결재 19. 학습플래너 제작 및 배포 결재 20. 직업교육혁신센터 규정 21. 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22. 학생지원협의회 지침	1.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기초학습능력 국어 진단평가와 기초 수학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국어 기초학습능력 부진 학생을 위한 학습능력 향상 지원으로 기초 튜터링 사업을 진행한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학습유형 검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학습법 경진대회, 자기주 도학습법 모델 개발, 학사경고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습역량 강 화 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판정함 3. 부서 자체평가 보고서의 전년도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통해 전년도 개선과제 및 이행실적과,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 른 개선과제 이행실적을 확인하였고, 직업교육혁신센터 규정 중 운영위원회의 조항을 마련하여 운영 평가 및 개선 계획의 품질관 리에 대한 사항의 심의를 명시하였고 회의록을 통해 해당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학생지원협의회를 통해 학생지원체계에 대한 환류 가 이루어진 사항을 부서 자체 평가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판정함
3	3.2	3.2.1	3.2.1.3	○				1. 교원 강의평가 운영 규정 2. 교수업적평가 규정 3. 2020~2021학년도 강의평가 관련 내부결재 4. 2020~2021학년도 강의평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1. 대학은 교원의 강의평가를 위한 교원 강의평가 운영 규정을 갖 추고 있으며, 매학기 LMS 시스템을 활용한 중간 강의 평가 및 통 합시스템을 활용한 기말 강의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2. 대학은 기말 강의평가 결과를 강의평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5. 2020~2021학년도 교수법 연수 관련 내부결재	처 분석하고 있으며, 강의평가 결과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전임교원)하고 저조자의 경우 강의개선계획서 제출, 교수법 관련 연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강의 평가 저조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컨설팅(마이크로 티칭)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셀프모니터링, 교수법유형진단, 교수법 특강, 교수연구 동아리, 교수법 콘서트, 교수연수지원 등의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직업교육혁신센터 자체평가 보고서 및 세부 프로그램별 결재 서류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교수의 강의역량 향상을 위해 평가영역(평가내용)과 평가지 및 배점 기준을 운영계획 수립시 미리 설정하고 운영하며, 차년도 1월에 직업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는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과제를 확인하고 이행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1	4.1.1	4.1.1.1	○				1.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 규정 2.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3.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 4. 연구비 관리 지침 5. 산학협동위원회 운영 규정 6. 교원업적평가 규정 7. 현장실습운영 규정 8. 현장실습운영 지침 9.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 10.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11. 산학협동위원회 운영규정 12. 취업창업지원규정 13.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14. 사무분장 규정 15. 산학협력처 부서별 업무분장 내부결재 및 회의록 16. 산학협동위원회 구성 내부결재 및 회의록 17. 산학협력처 부서별 업무분장 내부결재 18. 산학협력활동자체평가보고서	1. 대학은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정관」,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산학협동위원회 운영규정」,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 「연구비 관리 지침」, 「교원업적평가 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임용규정」, 「산학협력중점교원재임용평가규정」, 「현장실습운영규정」, 「현장실습운영지침」, 「현장실습지원센터 규정」,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취업창업지원규정」, 「가족회사 운영지침」,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대학은 산학협력활동을 위해 별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처 산하에 산학협력단(단장 포함 8명), 산학취업지원팀(2명), 현장실습지원센터(3명) 조직을 총 14명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사무분장 규정」 및 「산학협력처 부서별 업무분장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하였고, 산학협동위원회 및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의 산학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음을 「산학협동위원회 구성 내부결재 및 회의록」 및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내부결재 및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대학은 대학산학협력활동 자체 평가를 통해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노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도출된 개선계획에 대하여 산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19. 산학협력발전계획 20. 산학협력활동 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21. 산학협력활동 부서 운영계획서	학협력 주관부서 및 지원부서의 부서 운영계획서를 통해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1	4.1.1	4.1.1.2	○				1. 산학협력처 부서별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2.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장애아동재활센터,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3.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보고서 4.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종합평가보고서(2021) 5.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6. 대학산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산학협력활동자체평가보고서 산학협력발전계획 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부서운영계획서	1. 대학은 산학협력처 산하의 산학협력단, 산학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교육센터 등 조직별로 부서 자체평가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산학협력처 부서별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산학협력 사업 부서별로 연도별 자체평가를 진행하여 차년도 개선사항을 도출한 것을 「산학협력처 부서별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장애아동재활센터,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보고서」을 통해 확인하였고, 대학산학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대학의 전체 산학협력활동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차년도 환류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산학협력위원회 규정」, 「대학산학협력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1	4.1.2	4.1.2.1	○				1. 산학협력처 사무분장 규정 2. 산학협동위원회 운영 규정 3. 취업창업지원 규정 4. 학생역량개발시스템 운영 지침 5. 학생지원협의회 학생지원 지침 6. 창업교육센터 운영 규정 7.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규정 8. 학칙 9. 장학규정 10. 취창업부서 전담 인력현황 11. 업무분장 12. 학생지원지침 13. 산학취업지원팀 부서 운영계획서 14. 산학취업지원팀 자체평가보고서 15.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1. 대학은 취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분장 규정」, 「산학협동위원회 운영 규정」, 「취업창업지원 규정」, 「학생역량개발시스템 운영지침」, 「학생지원 지침」, 「창업교육센터운영 규정」,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규정」, 「장학 규정」, 「학칙」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해당 규정 및 지침에 취창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협력처(전담인력 1명) 산하에 산학취업지원팀(전담인력 2명)을 조직하여 2명의 전담인력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학생지원조직 중 산학취업지원팀이 당면직으로 운영되는 학생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부서간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을 「직제 규정 또는 사무분장규정」, 「취창업부서 전담 인력현황」, 「업무분장」, 「학생지원지침」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대학은 Nice 핵심역량 기반 진로종합체계를 통해 학생역량 체계를 수립하고 취창업 강화를 위한 체계와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16. 취업창업지원규정 17.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 18. 취업창업지원운영위원회 회의록 19.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 회의록 20.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1.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22. 학생지원협의회 규정 23. 학생지원협의회 회의록 24. NICE 핵심역량 기반 진로종합체계 개발 보고서	운영중이며, 중장기발전계획 연차평가를 통해 취창업인프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산학취업지원팀 부서 자체평가 및 부서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을 위한 별도의 학생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하여 환류하며, 취업창업지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취창업의 계획 및 결과 및 취창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단계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1	4.1.2	4.1.2.2	○				1. 산학취업지원팀 부서 운영계획서 2. 산학취업지원팀 자체평가보고서 3.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적 4. 취업창업지원규정 5. 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 6. 취업창업지원운영위원회 회의록 7. 창업교육센터운영위원회 회의록 8.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10. 학생지원협의회 규정 11. 학생지원협의회 회의록	1. 대학의 취업창업지원 계획은 취업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자체평가를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차년도 부서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였음을 「취업창업지원운영위원회 회의록」과 「산학취업지원팀 부서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국고로 진행되는 사업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취업업 지원 취업준비도검사, 특강, 경진대회, 전시회, 박람회, 캠프, 상담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의 취업업 지원의 평가는 「산학취업지원팀 자체평가보고서」, 및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 도출된 과제의 개선실적은 「산학취업지원팀 부서 운영계획서」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국고로 진행한 사업의 경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보고서」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학생지원협의회를 통한 비교과 효과성 분석을 통해 취업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차년도 부서운영계획에 반영하였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1	4.1.2	4.1.2.3	○				1. 정보공시 5-다.졸업생의 취업현황 2. 취업통계조사 결과 송부 공문	1.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정보공시 5-다. 졸업생의 취업현황에 근거하여 2018년 75.7%, 2019년 75.6%, 2020년 76.5%, 2021년 73.7% 3개년도 평균 75.3% 인증 기준인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2	4.2.1	4.2.1.1	○	○			1. 현장실습 운영규정	1. 대학은 현장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장(1명)과 전담직원(2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2. 현장실습 운영지침 3.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4.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5. 현장실습 실무매뉴얼 6. 현장실습 교수용 가이드라인 7. 현장실습 학생용 가이드라인 8. 현장실습 지침서 작성 가이드라인 9.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분장 실시 내부결재 10.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록 11. 현장실습 코로나 대응 12. 현장실습우수기업 인증제 13. 현장실습운영결과 보고서 14. 현장실습 만족도조사결과 15. 현장실습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명)의 체계를 갖추고 「현장실습 운영규정」, 「현장실습 운영지침」,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실습 실무매뉴얼」, 「현장실습 교수용 가이드라인」, 「현장실습 학생용 가이드라인」, 「현장실습 지침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의 매뉴얼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산학협력처 산하에 현장실습업무를 전담하는 현장실습센터를 두고 센터장(1명)과 전담직원(2명)의 체계를 갖추고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분장 실시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현장실습 계획, 규정, 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대학은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의 내용에 실습환경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였고, 현장실습 개별 대응매뉴얼 및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보험 가입과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한 현장실습 사후 관리 및 실습 전 안전교육과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등의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사전교육특강 및 안전장비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2	4.2.1	4.2.1.2	○				1.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운영계획서 2. 학과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3.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내부결재 4. 사전교육특강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5. 사전협의회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6. 사후평가회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7. 현장실습 참여수기 공모전 시행 기안 및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8. 현장실습 1차 일지 콘테스트 기안 및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9. 현장실습 2차 일지 콘테스트 기안 및 심사위원	1. 만족도조사, 요구도조사, 운영평가 개선방안을 반영한 부서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을 「현장실습지원센터 부서 운영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였고,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사전교육특강, 사전협의회, 사후평가회, 수기공모전, 일지콘테스트 등의 실적을 「학과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사전교육특강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사전협의회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사후평가회 개최 신청서 및 결과보고」, 「현장실습 참여수기 공모전 시행 기안 및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현장실습 1차 및 2차 일지 콘테스트 기안 및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년도별 현장실습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함 2. 현장실습 지원에 대한 평가로 「학과 현장실습 운영평가 결과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회 결과보고 10. 학생 실습 종합보험 가입 11. 년도별 현장실습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2. 학과 현장실습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13.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자체평가보 고서) 14. 현장실습 관련 서류(서식)등록 지정 내부결재 15. 현장실습센터운영규정 16.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규정 17. 현장실습센터 부서 자체평가보고서	보고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자체평가보고서)」, 「현장실습센터 부서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였 고, 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을 「현장실습센터 부서 운영계획 서」을 통해 반영함을 확인하였으며, 당해년도 사업의 신설, 개선, 확대, 운영 효율화를 위한 행정업무의 개선실적을 「현장실습센터 부서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4	4.3	4.3.1	4.3.1.1	○				1.평생교육원운영규정 2.평생교육원 조직도 3.평생교육원 업무분장 변경 보고 4.평생교육사 자격증 5. 학칙 제84조(부설기관) 6. 사무분장규정 제 23조(평생교육원) 7. 만족도조사	1.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칙 제 84조(부설기관)」에 평생교 육원을 명시하고 「사무분장규정 제23조(평생교육원)」에 소관 사 무를 지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을 제정하 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직제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지원팀을 행정조직에 규정하고, 「평생교육원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원 원장 및 운영위 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장을 포함하여 4명이 전담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지 닌 전문인력임을 「평생교육원 조직도」, 「평생교육원 업무분장 변경 보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 함. 3. 경기도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경기꿈의대학 운영, 수원시와의 협약을 통한 수원평생교육대학과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경기 남부지역 3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돕는 평생학습 기관으로 서의 역할 수행 등 지역사회, 자치단체 등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 하여 협력 운영하고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고 있어 충족 판정함.

기준	세부 기준	평가 요소	주요 판단사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4	4.3	4.3.1	4.3.1.2	○				1. 평생교육지원팀 운영계획서 2. 평생교육지원팀 자체평가 보고서 3.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보고(회의록) 4. 일반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5. 학점은행제 강의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1. 평생교육원은 년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운영계획서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당해년도 운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실적을 평가 분석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자체평가 보고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1	5.1.1.1	○				1. 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 2. 학생행사안전관리규정 3.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위원회규정 4.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5.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6. 장학규정 7. 보건실운영지침 8. 정보공시-장학금 수혜 현황 9. 업무분장표 내부결재, 10. 부서운영계획(학생지원팀) 11.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12. 복지설문조사 13. 학생복지지원(소리함) 14. 교내 장학금 장학제도 15. 총학생회 복지시설 개선 요청서 16. 교양체육실습실 운영 17. 해외 어학연수 시행 18. 학생봉사단 운영 19. 농촌 봉사활동 시행 20. 축제, 체육대회, OT진행	1. 대학은 학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지침으로 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 학생행사 안전관리규정,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위원회 규정,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장학규정, 교육만족도조사규정, 장학제도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2. 교육만족도 조사, 재학생 복지 설문조사, 소리함, 총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 복지와 관련한 학생 의견 수렴 과정을 확인하였고, 학생지원팀 부서운영계획서에 업무 분장, 학생복지지원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가족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장애인장학금, 다문화가족장학금, 외국인학생 장학금, 직장인면학장학금 등), 교양체육실습실 운영, 해외 어학연수, 학생봉사단 운영, 농촌봉사활동 등의 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1	5.1.1.2	○				1. 보건실 운영지침 2. 간호사 및 교원자격증	1.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실 운영지침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3. 의약품·소모품 구입 4. 의약품·소모품 사용 현황 5. 교직원 대상 건강검진실시(교내) 6. 캠페인(프로그램) 운영 7. 보건실 이용자 만족도조사	2. 보건실은 간호사 및 교원자격증을 구비한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의약품, 소모품, 건강검진실시 운영실적, 건강관련 캠페인 실적 등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1	5.1.1.3	○				1. 정보공시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	1. 대학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정보공시 12-다-1에 근거하여 2017년도 16.3%, 2018년도 15.3%, 2019년도 15.3%, 2020년도 14.9%, 2021년도 14.9%로 인증평가 충족 기준인 10% 이상으로 충족 판정함
5	5.1	5.1.2	5.1.2.1	○				1. 장학규정 2. 상벌규정 3. 학생준칙 4.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5. 교육만족도조사 규정 6. 학생회칙 7. 학생회장 선거규정 8. 학생자치기구 간부선임규정 9. 학생회관 사용규정, 학생회 운영 10. 중앙동아리 등록 및 운영규정 11. 중앙동아리 운영 12. 전공동아리 운영지침 13. 개인별 업무분장개인별 업무분장 14. 부서운영계획서 15. 학생지도위원회 명단	1.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과 지침으로 교육만족도조사규정, 학생지도위원회규정, 학생행사 안전관리 규정, 장학규정, 장학제도, 학생상벌 규정, 학생준칙, 학생회칙, 학생회(정, 부)장 선거규정, 미디어센터 운영규정, 학생자치기구 간부 선임 규정, 학생단체(중앙동아리)등록 및 운영 규정, 전공동아리 운영지침 등의 규정 및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학생회칙 상에 총학생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학생연합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별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 및 추진체계로 담당인력과 업무분장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분장과 지원조직체계 및 학생지도위원회 명단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2	5.1.2.2	○				1. 부서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2. 교육만족도조사 결과 3. 학생 자치기구 간부 교내장학금 지급 현황 4. 학생회 운영 5. 학과 전공동아리 운영 실적 6. 중앙동아리 운영	1. 대학은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부서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생활동(학생회, 체육대회, 축제,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함 2. 재학생 복지 설문조사, 교육만족도조사 결과, 소리함 운영계획과 학생 요구사항 심의(평가)결과와 학생지원팀 부서자체평가를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7. 미디어센터 운영 8. 학생활동 지원 실적 9. 학생지도위원회 명단 10.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록 11. 학생복지설문조사, 소리함 12. 총학생회 복지시설 개선 요청서	통해 학생활동 지원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 장학사업부분 : 드림플러스 장학금 신설 및 시행, 외국인학생장학금 신설, 장학제도 홍보 홈페이지 개편 등 확인 - 장학제도 홍보와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0.08점 상승, 선발 기준 등 상승의 개선을 확인 - 학생활동지원부분 : 안전사고(음주, 폭행)예방을 위한 이동파출소 운영, 전공동아리 활동지원 등 확인, 전공동아리 복수 전공동아리 활동 제도 확인 - 학생자치기구활동 지원 : 학생봉사단 사회봉사, 학생기관자치(축제, 체육대회, 수련회 등)활동 지원, 소리함 운영, 축제안전 이동파출소 운영, 축제 중 교내 주류 판매 금지와 미락전 운영 최소화 및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 진행과 교육공동체 생활안전 경진대회개최, 학생회와 함께하는 학생인권보호소 운영 등 확인 - 평생지도교수 배정 및 관리, 전공동아리 활동지원, 학과별 대학생활안내 - 특별학생(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학교생활 도우미 사업, 학생, 교직원 건강권 보호, 교과외 활동시 상해 치료비 지원 등 확인함
5	5.1	5.1.2	5.1.2.3	○				1. 학생행사 안전관리 규정 2. 개인별 업무분장 3.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문서철 4. 경영자책임보험 가입	1. 대학은 학생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학생행사 안전규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함 2.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학생지원팀의 담당 인력과 업무분장을 통해 추진체제를 확인함 3. 학생행사안전규정에 의거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문서철과 학생지원팀 담당자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고, 학생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영자책임보험에 가입한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3	5.1.3.1	○				1. 학생 상담 센터 규정	1. 대학은 학생 상담 센터 규정 및 학생상담센터운영 지침을 제정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2. 학생 상담 센터 운영 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처리에 관한 규정 취창업지원규정 학생지원협의회 지침 평생지도교수제 운영규정 학생역량개발시스템 운영지침 다문화가족학생지원규정 NICE 핵심역량 기반 진로종합체계 개발 보고서 역량기반 교육체계 재정립 보고서 2. 학생 상담 지원 인력 3. 학생 상담 지원 인력의 전문성 4. 학생상담 인력 근무일지 5. 학생상담센터 재학생 수요조사 6. 재학생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7. 운영회의록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8. 오프라인(대학생활적응검사 I, II, III) 온라인(종합 심리, 진로적성) 검사프로그램 시행 및 결과보고 9. 학생상담(개인·집단) 결과보고 및 검사 및 해석 상담 지원 10. 검사 및 해석 상담 지원을 위한 검사지 구입 11. 학과맞춤형서비스 시행 및 결과보고 12. 진로 및 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결과 보고 13. 진로 및 심리지원 행사 ‘찾아가는 상담소’ ‘열린 상담소’ ‘캠페인’ 시행 및 결과보고 14. 상담센터 홍보 15. 교직원 상담 전문성증진 직무역량강화 실시 및 결과보고 16. 관련부서 연계 지원 사업 17. 멘토링(또래상담)사업 시행 및 결과보고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처리에 관한규정, 취창업지원규정, 학생지원협의회 지침, 평생지도교수제운영규정, 학생역량개발시스템 운영지침, 다문화 가족학생지원규정 등을 마련하여 해당 규정에 따른 심리 상담 및 진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학생 상담을 위한 운영체제로 지원인력, 전문성, 근무일지, 운영회의록,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등을 확인함 3. 상담심리전공 유자격자 상담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고, 상담교수, 외부상담원도 순환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5	5.1	5.1.3	5.1.3.2	○				1. 학생 상담 지원 규정 및 지침 2. 학생 상담 지원 인력 3. 학생 상담 지원 인력의 전문성 4. 학생상담 인력 근무일지 5. 학생상담센터 재학생 수요조사 6. 재학생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7. 운영회의록 운영계획서 및 자체평가보고서 8. 오프라인(대학생활적응검사Ⅰ,Ⅱ,Ⅲ) 온라인(종합 심리, 진로적성) 검사프로그램 시행 및 결과보고 9. 학생상담(개인·집단) 결과보고 및 검사 및 해석 상담 지원 10. 검사 및 해석 상담 지원을 위한 검사지 구입 11. 학과맞춤형서비스 시행 및 결과보고 12. 진로 및 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 시행 및 결과보고 13. 진로 및 심리지원 행사 ‘찾아가는 상담소’ ‘열린 상담소’ ‘캠페인’ 시행 및 결과보고 14. 상담센터 홍보 15. 교직원 상담 전문성증진 직무역량강화 실시 및 결과보고 16. 관련부서 연계 지원 사업 17. 멘토링(또래상담)사업 시행 및 결과보고	1. 학생 상담 운영실적을 학생상담센터 운영계획서와 자체평가보고서, 오프라인 대학생활적응검사, 온라인 검사프로그램 및 결과보고 및 해석 상담 지원, 개인, 집단 학생상담 지원, 학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 진로 및 심리지원 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소, 열린상담소 등 실적을 확인함 2. 재학생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결과와 학생상담센터 재학생 수요조사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서자체평가를 진행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부서운영계획서에 반영한 것을 부서 자체평가보고서 및 부서운영계획서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1	5.1.4	5.1.4.1	○				1. 부서운영계획서 2.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3.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평가위원회 규정 4. 다문화가족학생 지원 규정 5. 장애인 장학금 지급	1.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해 학칙,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 규정, 교육복지지원 평가위원회 규정, 다문화가족학생지원 규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양강좌, 캠페인 실시, 장애학생 상담과 장학금 지원, 소수집단 학생들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6. 다문화가족 장학금 지급 7.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급 8. 장애,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학생 재학현황조사 9.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양강좌, 캠페인 실시 및 결과보고 10. 장애학생 간담회 및 요구조사 결과보고 11. 장애학생 상담 일지 12. 장애학생 문자 및 이메일 발송 내역 13. 장애학생 지원 협조문 14. 업무분장표 15. 학칙 제21장 제87조, 제 9장 제43조 16.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사진) 17.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회의록 문서철 18. 다문화가족학생지원특별지원위원회 회의록 문서철	을 위한 장학금, 위원회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학생을 위한 지원조직과 전담인력을 학생지원팀 업무분장표를 통해 확인하였고,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과 장애학생 특별위원회 규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함 3. 건물 출입구 경사로 설치,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계단 앞 유도점자블럭 설치, 장애인 주차구역 구비, 건물에 엘리베이터 구비,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2	5.2.1	5.2.1.1	○				1. 학술정보관 운영규정 2. 2018학년도 학술정보관 업무분장 내부결재 3. 사서자격증 및 학위기 사본	1. 도서관의 조직, 운영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의 제반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의 발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학술정보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음 2. 대학 구성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준사서 이상,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을 대학 규모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학술정보관 업무분장 등의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함 3. 학술정보관의 전문 인력 및 자격증 보유현황은 2급 정사서 1명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대학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충족(1명 이상)함을 사서자격증과 학위기 등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2	5.2.1	5.2.1.2	○				1. 학술정보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4. 대학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5. 학술정보관 부서운영계획서 6. 학술정보관 자체평가보고서	1. 학술정보관에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서와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대비 운영실적을 학술정보관 예산집행내역서를 통해 확인 2. 학술정보관의 공간, 장서, 학습환경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분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7. 학술정보관 예산요구내역서 8. 학술정보관 예산집행내역서 9. 동남보건대학교 재학생 만족도 조사보고서 도서관 부문 10. 학술정보관 유지보수 협조문 11. 도서구입철 12. 실별우수이용자 시상 13. 학술정보관 전자정보박람회 개최 14.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알림	석, 학술정보관 자체평가결과 및 운영위원회 논의 회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술정보관 유지보수, 리모델링, 서버, 도서구입과 우수이용자 시상 등 평가 및 개선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2	5.2.1	5.2.1.3	○				1. 정보공시 13-가. 장서보유 및 도서관 현황 2. 학술정보관 승강기 승강로 조성 공사비 지급 내부결재(2020.10.30) 3. 학술정보관 승강기 설치비 잔금 지급 내부결재(2020.11.09)	1.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8년도 22,1천원, 2019년도 22,1천원, 2020년도 21,7천원, 2021년도 55,6천원으로 인증평가 충족기준인 21.6천원을 초과하고 있음을 대학정보공시 13-가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2. 2021년도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대학정보공시 13-가에 명시되어있는 값과 2020년도 도서관 환경개선비(승강기 설치) 결산의 합산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2	5.2.2	5.2.2.1	○				1. 정보공시 14-라, 교사확보율 2. 2017, 2018, 2019학년도 시설현황집계표	1. 대학의 법정 교사확보율은 2018학년도 132.0%, 2019학년도 138.0%, 2020학년도 137.9%, 2021학년도 138.7%로 인증평가 충족기준 100%이상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정보공시 및 2018~2021 시설현황집계표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2	5.2.2	5.2.2.2	○				1. 시설물 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 3. 전기 안전관리규정 4.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5. 시설물 관리대장 6. 보안업무일지 7.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교육부 공문 8.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 9.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10.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11. 연구·실험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	1. 대학은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규정 「시설물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전기관리규정」, 「연구실안전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동 규정을 통해 확인함 2. 대학은 교육시설 관리를 위한 규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시설물관리대장」, 「보안업무일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및 「분야별 정밀 점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시설을 유지보수, 개선 등을 진행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시설물 개선 실적시설물 개선 실적」 관련 내부결재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함 3. 대학은 「시설물 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 「전기 안전관리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고서 12. 시설물 개선 실적	규정」,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등의 안전관리 규정을 구비하고 대학의 모든 시설물을 건축, 전기, 소방 연구실 등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을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보고 교육부 공문」,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작동기능점검 보고서」, 「연구·실험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5	5.2	5.2.3	5.2.3.1	○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2. 보안업무규정 3. 개인정보 처리방침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 5. 문서관리 및 보존지침 6. 정보보안 기본지침 7. 침해사고 대응지침 8.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내부결재 9.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이력 및 공표 이력 10. 보안 진단 점검 결과 보고 내부결재 11.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 12.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 13.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교육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 14. 전산장비(백업시스템 외 2종) 구축 계약 15.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 계약 16. 백업솔루션 유지보수 계약 17. 서버 보안 유지보수 계약 18. 웹 방화벽 구입 계약 19.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 계약 20. OTP 솔루션 구축 계약 21. 회의록 보안업무 추진계획 22. 회의록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23. 사립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분석 결과 보고	1. 대학은 대학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문서관리 및 보존지침」, 「정보보안 기본지침」, 「침해사고 대응지침」 등 규정 및 지침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제도적 기본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통해 구축 운영되고 있음을 동 규정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내부결재」,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이력 및 공표 이력」을 통해 확인하였고, 내부 구성원 및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교육 실시결과 보고 내부결재」를 통해 확인함 3. 대학은 교내 문서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등을 기록하지 않도록 「문서관리 및 보존지침」을 통해 규정화 하였고,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 기본지침」, 「침해사고 대응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 백업서버를 전산정보센터와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여 화재 등으로부터 행정 기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 구축 계약」, 「백업소프트웨어 구입 계약」, 「백업솔루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백업시스템을 구축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웹 방화벽 구입 계약」,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 계약」, 「OTP 솔루션 구축계약」 등을 통해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서 24. 사립대 정보보안 수준진단 분석 결과 보고서	
6	6.1	6.1.1	6.1.1.1	○				1. 정관(제6장 교직원) 2. 교원인사규정 3. 교원인사위원회규정 4.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5. 교수업적평가규정 6. 교직원 포상규정 7. 윤리헌장 규정 8. 명예교수 규정 9. 겸임교원 인사규정 10. 교원명부, 교원인사위원회 위촉내부결재, 정년 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 위촉내부결재 11. 교원 신규임용 관련 자료 12. 교원 승진임용 관련 자료 13. 교원 재임용 관련 자료 14. 교원 해임 관련 자료 15.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위원회 회의록 16. 강사 인사규정 17. 강사 신규임용에 관한 지침 18. 시간강사(강사) 위촉 및 계약 관련서철 19.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시간강사, 강사)	1. 대학은 교원의 채용, 재임용, 승진, 해임 등 임면에 관하여 관 계 법령에 부합하는 정관, 교원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함 2. 교원 신규채용 시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학문 적, 실무적 자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심사위원 위촉의 기본원칙에 따라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 정하고 투명하게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 신규임용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1	6.1.1.2	○				1. 정관 2. 교원 인사규정 3. 교수업적평가 규정 4. 교직원 포상규정 5. 교수업적평가 시행관련 자료 6. 교수업적평가 결과 보고	1. 대학은 교수업적평가 규정, 교직원 포상 규정 등 교원평가에 대한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고, 교원의 자질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활 동, 학생지도, 연구활동, 봉사활동, 산학협동 등 5개 영역으로 구 분하여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하고 저 평가자 들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집하고 있음을 교수업적평가 시행관련 자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7. 교수업적평가 우수자 포상 및 저평가자 관련 8. 강의전담재임용평가규정 9. 산학협력중점교원재임용평가규정 10.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11.교원강의평가운영규정 12.강의평가운영위원회 회의록 13.강의평가분석보고서 14.교원인사위원회 규정 15.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16.교원명부, 교원인사위원회 위촉 내부결재, 정년 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위촉 내부결재 17.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 위원회 회의록	료 및 결과보고철을 확인하였으며, 승진 및 재임용 등과 관련 한 평가를 교원인사규정, 강의전담 재임용평가규정, 산학협력 중점교 원재임용 평가규정 등을 통해 규정화하고 해당규정에 의거하여 평 가하고 있음을 교원인사위원회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였고, 교원강 의평가 운영규정을 통해 강의평가 저 평가자들에 대하여 개선계획 을 수집하고 교원의 강의 평가를 활용하여 강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을 강의평가운영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판 정함 2. 교원인사위원회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는 보직자와 비 보직자, 직급, 계열, 성별 등을 고려하여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 성하고 있으며, 교원 임면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교원인사위원회, 정년보장교원임 용 심사위원회 규정 및 회의록을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1	6.1.1.3	○				1. 대학정보공시, 6-가 전체교원대비 전임교원현 황 2. 대학정보공시, 6-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1. 정보공시 6-가, 나를 확인한 결과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2018년 55.0%(편제기준 63%), 2019년 53.1%(편제 기준 60.1%), 2020년 52.17%(편제기준 60.91%), 2021년 57.4%(편제기준 64.97%)로 인증평가 기준인 50%이상이므로 충 족 판정함
6	6.1	6.1.1	6.1.1.4	○				1. 정관 2. 직원인사규정 3. 취업규칙 4. 계약직원 등 인사 및 복무규정 5.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 6. 직원근무평정규정 7. 직원근무평정심의위원회 규정 8. 일반직징계위원회규정 9. 사무분장규정 10. 위임전결규정	1. 대학은 직원의 임용(채용, 승진,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과 관련하여 정관, 직원인사규정, 취업규칙, 직원근무평정규정 등 직 원 인사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규정을 대학홈페이지 대학안내(규정및 지침)에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직원의 채용, 승진, 인사평가 및 보상, 해임 등의 인적 관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채용공고, 채용절 차, 승진 및 해임절차 등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게 직원인사를 시 행하고 있음을 신규직원 채용 관련 자료 및 직원인사위원회 회의 록 등으로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11. 신규직원 채용 관련 자료 12. 무기계약직원 전환 자료 13. 부서별 업무분장표 14. 직원 근무평정 관련 자료 15. 직원 퇴직 관련 자료 16. 직원인사위원회 회의록	
6	6.1	6.1.2	6.1.2.1	○				1. 전임교원 연구년제 규정 2. 교원 현장연수 규정 3. 교원 파견 규정 4. 전임교원 협회비 지급 지침 5. 간호학과 교수역량개발지원비 지원계획 보고 6. 신임교원 연수 시행 7. 산업체 현장연수 시행 및 결과 8. 전임교원 협회비 지급 및 간호학과 교수역량개발 지원비 신청 내부결재 9. 학사운영팀 자체평가 보고서 10. 학과 CQI보고서	1. 대학은 전임교원 연구년제 규정, 교원 현장연수 규정, 교원 파견 규정 등 교원 역량개발 관련규정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함 2. 교원 역량개발 관련 실적으로 산업체 현장연수는 2020학년도 72건(83,000천원), 2021학년도 78건(8,420천원)이며, 교원전공관련 협회비로는 2020학년도 21건(1,595천원), 2021학년도 35건(2,660천원)이며, 간호학과 교수역량개발지원비는 2020학년도 68건(6,462천원), 2021학년도 108건(11,243천원)의 지원실적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대학 혁신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원 역량개발 지원에 대하여 학사운영팀(부서운영계획)과 학과(운영계획)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보고서, 학과 CQI보고서에서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운영계획에 환류하고 있음. 또한 교원의 전공 관련 교원역량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산업체 현장 연수실적을 교원의 재임용과, 승진 심사에 필수조건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2	6.1.2.2	○				1. 전임교원 연구년제 규정 2. 연구년제 신청 공지 안내: 학과장 회의 자료 3. 전임교원 연구년제 내부결재 4. 연구년제 해당기간동안 급여대장	대학은 교원 역량개발을 위하여 16주 이상의 교원 연구년제를 실시하고 2020학년도 1명, 2021학년도 2명의 연구년제 추진 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2	6.1.2.3	○				1.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개발지원 규정 2. 직원 근무평정 규정 3. 직무 역량개발 관련 행.재정적 지원 현황 4. 직원 직무 역량개발 교육 참여 실적 현황 5. 직무 역량개발 교육 참여(지원) 실적 내부결재 6. 연수 이수증 첨부(통합정보시스템)	1.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에 관한 기본사항을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개발지원 규정 및 직원 근무평정 규정에 명시하고, 관련규정을 대학홈페이지 대학안내(규정및 지침)에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직원의 직무 역량개발을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한 직무교육, 전문대학 직무별 협의회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7. 직원 근무평정 결과보고 내부결재 8. 총무팀 부서자체평가보고서 9. 총무팀 부서운영계획서	참석 등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 연수 참여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직무능력 개발 및 교육훈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 등 이수 실적에 대해 평정점수에 반영하여 업무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대학은 직원의 직무역량 개발 지원에 대한 평가를 매년 근무평정 결과 보고 및 부서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진행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부서운영계획을 통해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1	6.1.3	6.1.3.1	○				1. 학술연구소운영규정 2. 교수업적평가규정 3. 전임교원 연구년제규정 4. 연구비중앙관리규정 5. 연구용기기운용규정 6. 연구윤리규정 7. 기관생명윤리규정 8. 연구노트 작성·관리규정 9. 산학협력단 정관 10. 연구소 논문집 제작비 지급 11. 연구윤리교육 결과보고 및 경비정산 1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위탁 협약 연장 1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위촉 14. 연구비 신청 지급 15. 정보공시자료 연구비수혜실적 16. 동남보건대학교 논문집 17. 학술연구소 자체평가보고서 18. 학술연구소 부서운영계획서	1. 대학은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비중앙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창작 등의 활동을 위해 2018년 31건 과제에 65,000천원, 2019년 25건 과제에 52,500천원, 2020년 23건 과제에 48,000천원, 2021년 23건 과제에 47,000천원을 지원하여 교원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적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3. 대학은 매년 학술연구소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해 연구 활동 성과에 대하여 자체 진단하고, 진단 한 내용에 대하여 차년도 부서 운영계획서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충족판정함
6	6.1	6.1.3	6.1.3.2	○				1. 대학정보공시, 7-가. 정보공시자료 전임교원 연구실적	1.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은 2018년 0.4건, 2019년 0.4건, 2020년 0.4건으로 인증평가 충족 기준인 0.2건 이상의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정보공시를 통해 확인하여 충족 판정함
6	6.2	6.2.1	6.2.1.1	○				1. 2019-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1. 대학의 등록금 대비 교원 인건비 비율은 2019학년도 41.7%,

기 준	세 부 기 준	평 가 요 소	주 요 판 단 사 항	대학자체평가 판정수준				대학자체평가 결과	
				Y	C	N	P	자체평가 근거자료	자체평가 판단 이유
								2. 2020학년도 교원 개인별 연봉 현황표 3. 교직원 급여현황	2020학년도 39.5%로 인증평가 총족 기준인 30%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총족 판정함
6	6.2	6.2.1	6.2.1.2	○				1. 2019-2020학년도 교비회계 결산서 2. 2020학년도 직원 개인별 연봉 현황표 3. 교직원 급여현황	1. 대학의 등록금 대비 직원 인건비 비율은 2019학년도 16.5%, 2020학년도 16.0%로 인증원 총족 기준인 11%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총족 판정함
6	6.2	6.2.1	6.2.1.3	○				1. 교직원보수규정 제18조~제20조 2. 교직원 국내출장 및 여비지급 규정 3. 교직원 포상 규정 4.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5. 취업규칙 6. 교직원 복지 및 직무역량개발 지원 규정 7. 교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현황	1. 대학은 교직원 복지와 관련하여 교직원보수규정, 교직원 국내출장 및 여비규정, 교직원 포상규정 등 다양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규정을 대학홈페이지 대학안내(규정및 지침)에 공지하고 있음을 확인함 2. 대학은 해당 규정에 따라 교직원 자녀장학금, 경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293,920천원, 2021학년도 254,401천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황을 확인하였으므로 총족 판정함

제Ⅳ장 자체평가 활용계획

1. 우수사례 및 개선·보완사항

1) 우수사례

- 정량적정성 평가요소(필수정량지표 포함) 12개 모두 기준을 충족함

2) 개선·보완사항

- 해당 없음

2. 결과활용 계획

1)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결과 제출

- 2022년도 기관평가인증 자체평가 자료로 제출하고 각종 대내·외 평가의 자체 점검 자료로 활용

2)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시

-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 학생, 학부모, 기관, 산업체 등 수요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

3) 정책 수립에 반영

-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수립, 차기년도 사업예산의 효과적인 배분에 활용함과 더불어 대학경영 개선, 교육인프라 확충 등 대학 정책 수립에 활용

4)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개선을 위한 분석 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를 각 담당부서에 배포하여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